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2019. 7. 1. / 중앙도서관 도서1팀

I 개요

■ 목적

- 연구원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공문서의 생산 및 정보공개청구 업무 처리, 기록관의 공개재분류의 공개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

■ 활용 방법 및 적용 대상

- 문서 기안 시(연구원 임직원)
 - 문서 기안 시 문서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 구분' 항목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정보공개 청구 접수·처리 시(정보공개 접수 담당자 및 처리 담당자)
 - 대국민 서비스인 정보공개 청구 접수 및 처리 시 공개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기록관)
 - 기록관리 프로세스 중 비(부분)공개 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업무 수행 시 공개 여부의 판단 근거로 활용

■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공개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및 고시 의무]

■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input type="checkbox"/>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판단 기준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대상정보의 조건]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해당하지 않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 또는 비공개’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비법규사항’은 논외(서울행법 2006구합23098) - 직무상 비밀엄수(누설금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하지 않음(법령해석례 11-0014, 대법원 2006두3049) 		
세부 기준	번호	대상 정보	근거 법 조항(조항명) - 비공개사유
	1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록으로서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비밀의 공개)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및 자료의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4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안서의 세부사항(*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5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6	공익신고자 관련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7	회의록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녹취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관리)
	8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판단 기준	□ 정보 시 예상되는 안보·국방·통일에 대한 위협요소, 외교마찰 가능성 등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정보 공개로 인해 보장되는 국정의 투명성, 국가적 의혹해소, 국민의 권익보호보다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민방위 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 대피시설 구조도 -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피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정보 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 경로(IP대역) - 시스템 보안 솔루션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결과 취약부분 보고 내용 -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 시스템 로그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도청 등에 이용되거나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이 드러나게 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직접적인 개연성이 있음
	비밀기록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 비밀기록물 대장 및 분류사유 - 암호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전시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전시의 국정 운영 상황 등을 알 수 있음
	귀빈 참석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위원,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행사 관련 계획, 숙소 정보 등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개 시 대통령 및 주요 인사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음
	위기 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 (모의)훈련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태세 - 국가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악용되어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p>시설 관리(방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시설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 연구원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관리실 등) 관련 정보 -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 경비 및 순찰일지 -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연구원 시설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p>기타 비공개 요청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제협력전략 및 주요 국제회의에서 협상 진행중이거나 준비, 대응자료 중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사항 	

■ [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판단 기준	<p>□ 정보 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초래될 위험 또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공개 필요성보다 우선할 경우 비공개</p> <p>□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함을 요함(서울행법 2008구합31987)</p>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 연구원 건물 내 방호용 및 사고대비용 CCTV 위치 -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공개 시 참고인 및 피의자,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국민의 재산 보호	- 여권, 인감관리 대장	-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수 있음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개인별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4호]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내용	<p><input type="checkbox"/>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p> <p><input type="checkbox"/>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p>		
사유	<p><input type="checkbox"/>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p> <p><input type="checkbox"/>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함(대법원 2010두7048)</p>		
판단 기준	<p><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연구원 업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p> <p><input type="checkbox"/> '진행 중인'에 관련된 정보는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한정(대법원 2010두24913)</p>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 청구서 - 답변서 -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 소송 대응방침 - 증거자료 - 준비서면 - 법률자문 결과 - 사실조회 결과 -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진행 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 수사진행절차 -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 참고인 명단 - 수사의견서 - 범죄인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진행 중에 공개 시 수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내용	<p>□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p> <p>□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함</p> <p>□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시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p>												
사유	<p>□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고자 함</p> <p>□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위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함(대법원 2001두8827) - 행정내부에서의 자유롭고도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확보하고, 내부검토 단계의 미성숙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되어 무용한 혼란이나 오해를 초래하는 것이나 일부의 자에게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함임(2003 헌바81)</p>												
판단 기준	<p>□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 이에 해당여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대법원 2010두2913)</p> <p>□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한시적인 비공개 사유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시 해당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참고)</p>												
세부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40%;">대상 정보</th> <th style="width: 50%;">비공개 사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사</td> <td>- 불시 감사계획</td> <td>-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td> </tr> <tr> <td>- 불시 감사 업무 개선안</td> <td>-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감독·지도 점검</td> <td>- 불시 지도점검 계획</td> <td rowspan="2">-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td> </tr> <tr> <td>- 불시 조사·단속계획</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감사	- 불시 감사계획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독·지도 점검	- 불시 지도점검 계획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조사·단속계획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감사	- 불시 감사계획	- 공개 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감사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감독·지도 점검	- 불시 지도점검 계획	- 공개 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											
	- 불시 조사·단속계획												

	-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 공개 시 향후 같은 유형의 감독·지도점검 등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음
	- 지도감독 결과 중 대표자 등 관계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시험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 공개 시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 공개 시 채점위원의 신분이 밝혀져 시험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 계획 *시험공고 후 공개	-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	- 사업 확정 전 사업검토서 *사업 확정 후 공개(사안에 따름)	- 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연구용역 중간보고 *용역 완료 후 공개(사안에 따름)	-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 확정된 심사위원 명단은 심사 수행 후 공개	- 공개 시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정책결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 위원회 등 회의 녹음 파일	- 의사결정 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향후 동종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입찰 계약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 종료 이전 공개 시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설계 시공 공법 등	- 공개 시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되고 공정한 입찰계약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	- 교섭 완료 이전 공개 시 교섭의 난항,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개발	- 핵심산업기술 - 기술개발계획	- 공개 시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의 비밀이 유출될 수 있음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회의록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 변명서, 조사보고서, 소청심사조서, 입증자료	- 공개 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내용	<p>□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살아 있는)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포함) - 고유식별정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p>□ 다만, 다음의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함(법 제9조제1항제6호 가목-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가능한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사유	<p>□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p>
판단 기준	<p>□ 청구된 내용 중 6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일부 포함할 경우 비공개로 결정할 수 없고, 비공개 부분만 가리고 부분공개(법 제14조)</p> <p>□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대법원 2011두23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공적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대법원 2012다49933, 헌재 2002헌마518) <p>□ 공개청구 대상정보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p>

비교·교량하여야 함. 그 외 개개의 개인식별정보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 비공개대상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정보의 분리가능성, 나머지 정보만으로 공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 공익을 위한 개인식별자료의 공개필요 여부 등을 판단(대법원 2004두9180)

□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나, 사망자의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관계되는 유족의 정보인 경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음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포함)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가족관계 -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사생활로 인한 징계내역	- 공개 시 개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의 사회적 활동 제한 등 사회적 활동에 관한 기회를 제약당할 우려가 있음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에 대한 평가 기록 - 개인에 대한 평가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필요시 공개) -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 신원조사 - 퇴직사실 확인 - 인사기록카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필요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 범죄사실 기록 - 납세내역 - 재산 및 채무 현황 - 급여 및 수당내역 - 복지포인트 및 사용 내역 - 건강 검진 및 의료기록 -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 공개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필요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식별정보 등을 제외하고 통계 등의 형태로는 제공 가능

공인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개인용)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자택주소	
	-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이메일 주소(개인용)	
	- 가족관계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필요시 공개)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재산 및 채무, 급여 현황	
	- 범죄 사실 기록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내역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서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위협을 줄 가능성, 명예훼손,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일반 시민	- 성명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 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자택주소	
	- 개인 이메일 주소	
	- 신용카드번호	
	- 통장계좌번호	
	- 가족관계	- 공개 시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학력 및 경력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자격증 소지 여부		
- 종교		
- 범죄사실 기록	- 공개 시 개인의 사회활동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음	
- 납세 및 소득내역	-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을 침해 할 우려가 있음	
- 재산 및 채무 현황		

□ 공개 대상정보

기타
사항

구분	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라목
	- 공문서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나 직급(대외직명 포함), 서명 *관인 서명 등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 행정기관의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알권리 충족, 위촉된 공인의 전문성 검증을 위하여 공개	
	- 공인의 성명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
	- 공인의 직업(소속 및 직위)	
일반시민	*제3자 의견청취 시	
	- 정보공개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소 중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은 제외하고 공개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 [7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내용	<p>□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공익법인, 종교법인, 특수법인, 기타 법인 외에 정치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도 포함되나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않음 <p>□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나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보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사유	<p>□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법원 2008두13101)</p>		
판단 기준	<p>□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결정(대법원 2009두19021)</p> <p>□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중앙행심 2012-24651)</p> <p>□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은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이 포함되며 반드시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이 이미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정부법무공단 2012-440)</p>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단체·기업·위탁 업체·개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 출연재산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 -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등기소, 금융기관 등) -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 예산서 - 총사업비 - 지급계획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공익법인의 관련 법에 의한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 정보, 산출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핵심산업기술
- 내부자금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내부관리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법인 등의 기술평가 결과
- 계약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이 제안한 내용

- 공개 시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 2007구합15131)		
판단 기준	<p>□ 제8호는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p> <p>□ 해당 계획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그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님</p> <p>□ 결정통지서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정황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p>		
세부 기준	구분	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건축 및 주택건설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주택건설 사업계획 검토결과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도시개발	- 공표 전 도시재정비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재건축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유통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도면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
	지역개발계획	- 공표 전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시설조성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혐오시설 유치계획 및 도면 - 공표 전 역세권 개발계획 및 도면	- 사업 공표 전 공개 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음